

충남대학교 대학원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에 관한 시행세칙

[제정 2015. 4.20.]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7장 학위청구논문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이하 “학과”라고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시행세칙은 학위청구논문(이하 “논문”이라 한다)을 제출하고자 하는 석사 및 박사 과정 학생에게 적용한다.

제3조(논문제출자격)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규정 제41조에서 정한 논문 제출자격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4조(논문제출자격시험) ①출제과목 수는 석사학위과정은 3과목 이상, 박사학위과정은 4과목 이상으로 한다.

②출제위원은 관련 분야의 전임교수로 위촉하고, 채점위원은 출제위원과 동일하게 위촉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따로 채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③자격시험의 합격 기준은 각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하고, 평균 70점 이상을 득한 경우 합격으로 한다(과목당 과락은 없음). 단, 불합격자는 다음 학기에 재응시할 수 있다.

④시험의 결과는 5년간 학과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외국어능력 기준)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1. TEPS 500점 이상
2. TOEIC 600점 이상
3. TOEFL(CBT) 177점 이상
4. TOEFL(iBT) 62점 이상
5. DELF A2 이상
6. JLPT 2급 이상

7. JPT 600점 이상
8. HSK 2급 이상
9. 독일어능력시험 A2 이상
10. 한자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11. 충남대학교에 개설된 외국어 강좌 60시간 이상 이수
12. 모국어가 한국어가 아닌 학위 후보자는 한국어 능력 시험 3급 이상

제6조(논문지도위원회) ①박사학위과정에 논문지도위원회를 운영한다.
②논문지도위원회는 전공교수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제7조(학술지게재 의무조건) ①박사학위 과정은 학진 등재지나 등재후보지에 단독 논문 1편 이상을 충족하거나, 또는 전국규모 이상의 학회에서 국내학술회의 단독발표 1회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게재증명서(게재된 논문이 심사를 합격한 경우에 한함)를 제출할 경우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8조(시행세칙의 개정) 시행세칙의 개정이 필요할 때는 학과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

부 칙(2015.4.20.)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